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5. 8. 25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'95. 8. 17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 '95. 8. 17

다. 상정일자: 제36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('95. 8. 25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총무국장 윤정중)

가. 제안이유

'95. 10. 1부터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자치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확보하여 일반여권 발급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구본청 총정원을 조정(974명→1,004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허영훈)

'95. 10. 1 부터 외무부의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4개의 자치구(영등포, 종로, 노원, 서초)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2조 (정원의 총수) 중 제1호 구본청의 정원을 974명에서 1,004명으로 30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서울시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영등포구 여권과 신설 정원요청이 내무부 지기12200-609('95. 8. 3)호로 정원의 승인이 확정되었고, 또한 여권 발급 대행업무를 차질없이 인수하여 추진일정에 따른 철저한 업무대행 준비와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영등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의결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: 1995. 8. 17

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'95. 10. 1 부터 일반여권 발급 업무를 자치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여 일반여권 발급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구본청 총정원 조정(974명→1,004명)

3. 개정근거

○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세부시행계획 시달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본청 1,004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'95. 9. 1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..... ..... 1. <u>구본청 : 974</u> 2~4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..... ..... 1. <u>구본청 : 1004</u> 2~4(현행과 같음)